

의안처리상황표

| | | | |
|----------------|-----------------------|----|----------------------------------|
| 의안번호 | 170 | | |
| 건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 | |
| 제안자 | 성북구청장 | | |
| 제안년월일 | 2016년 | 3월 | 21일 |
| 심사위원회 | 행정기획위원회 | | |
| 의결결과 | 2016년 | 3월 | 30일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
| 이송년월일 | 2016년 | 3월 | 일 |
|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 2016년 | 월 | 일 조례 제 호 |

<요지>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

| | |
|----------|-----|
| 의안 번호 | 170 |
|----------|-----|

제출년월일 : 2016.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함 (안 제2조)
- 나.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다.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라. 청년의 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7조~제14조)
- 마. 청년지원 정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청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7조)
- 바. 청년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세별첨)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제10조~제16조)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완료 (일자리경제과-39961 / 2015.10.30.)

다. 합 의

- 협의체(위원회) 구성 관련 : 합의 완료
 - 위원회 신설에 따른 검토 요청[일자리경제과-36305(2015.10.2.)]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협의 회신[마을담당관-6935(2015.10.7.)].
- 예산관련 협의 : 합의 완료
 - 2016년 청년지원사업 종합추진 계획[일자리경제과-39961(2015.10.30.)]

라.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입법예고 : 2016. 1. 14 ~ 2. 3(구보·홈페이지 게재), 의견제출 없음
- 인권 영향평가 결과 : 권고안 미반영

| 권 고 내 용 | 부서 검토 결과 |
|---------------------------------|--|
| 제5조제3항 : 특정성별 2/3를 넘지 않도록 규정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체 등의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

| | |
|---|---|
| |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기에 법령에 따라 집행할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이 구 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명시를 생략하여 입법의 경제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제5조제8항제4호 :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는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규정 삭제 | ▶ 미반영 ▶ 위원 해촉 사유에 관해 1~3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 기타에 해당하는 사유를 4호와 같이 규정함. |

○ 성별 영향평가 결과 : 권고안 미반영

| 권 고 내 용 | 부서 검토 결과 |
|--------------------------------|--|
| 제5조제3항 : 협의체 구성시 성별 고려 규정 마련 | ▶ 미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체 등의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기에 법령에 따라 집행할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이 구 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명시를 생략하여 입법의 경제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제5조제5항 : 위원회 위촉시 ‘성별 고려’ 규정 마련 | |

○ 부패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 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능력 개발

나. 고용 확대

다. 주거 안정

라.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마. 생활 안정

바. 문화 활성화

사. 권리 보호

아. 시설 설치 및 운영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의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

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 관련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3.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⑫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능력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 확대)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거 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 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

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 보호)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별표(부상금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청년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

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 시설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청년 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탁기관 등) ① 청년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년지원 업무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수탁기관 등) ① 수탁기관은 청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다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청년의 정의(범위)에 관한 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2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3) 행정재산 사용료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2조(사용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사용료)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0조 ~ 제16조)

- 제3장 민간위탁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 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 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 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 5조) 청년지원협의체 참석 수당 등 협의체 운영 시 비용 발생
- (안 제14조) 청년정책 우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및
모니터단 활동 수당 지급 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청년지원에 관련된 업무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우리 구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70 |
|----------|-----------|

제안년월일 : 2016년 3월 24일

제안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용어의 정의와 위탁기관의 재계약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2조 2호, 3호, 4호와 3조 1항 중 각각 “정치·문화 사회”에서 “정치”를 삭제한다.

나. 안 16조 1항(위탁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 한다

3.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경제·사회·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경제·사회·문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1회에 한하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u>정치·경제·사회·문화</u>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p> <p>3. "청년단체"란 청년의 <u>정치·경제·사회·문화</u> 등 모든 분야에서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u>정치·경제·사회·문화</u> 등 모든 분야에서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p> <p>5. (생 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p> |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경제·사회·문화</u> ----- ----- -----.</p> <p>3. ----- <u>경제·사회·문화</u> ----- ----- -----.</p> <p>4. ----- <u>경제·사회·문화</u> ----- ----- -----.</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p> |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위탁기관 등) ① 청년 시
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
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생략)

----- 경제·사회·문화적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기관 등) ① -----

-- 1회에 한하여-----

-----.

② (현행과 같음)